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0. 25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. 10. 19. 신종갑 의원 외 10명

나. 회부일자 : 2018. 10. 19.

다. 상정일자 :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8. 10. 25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채우진 의원

가. 제안이유

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 및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근거 조례를 마련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1)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기능(안 제3조~제4조)

2) 위탁 및 운영비 지원과 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(안 제5조~제6조)

3) 지도·감독의 의무 및 조직 및 지원과 이용료 등의 징수(안 제8조~제9조)

4)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(안 제10조)

5) 운영위원회와 수당 등(안 제11조~제12조)

6)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및 시행규칙(안 제13조~제14조)

3. 검토보고 (이주현 전문위원)

가. 조례 제정의 필요성 유무 : 필요함

○ 입시위주 교육과 놀이 공간이 없는 도시의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 압박과 왕따·우울 현상이 나타나고 부모의 맞벌이로 돌봄 부족 등의 상황을 맞아 우리구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 및 의료지원 등을 위한 체계적인 구립 '청소년 상담 복지센터'의 설치·운영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 그동안 '청소년복지 지원법'과 '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' 및 '여성가족부 지침'에 의거 '청소년상담 복지센터'가 운영되어 왔으나 향후 '마포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'의 설치 운영의 근거 마련과 청소년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이건 조례안 제정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.

○ 아울러, 지역내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"청소년 통합 지원체계" 구축운영을 위해 이건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

○ 특히, 향후 기존의 "마포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"를 2019.1월 확대 이전하고 향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구청장의 계획과 관련 이건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.

현재 운영상황	확대이전 운영계획
▸위치 : 시립 마포청소년수련관내 (서울시 소유 건축물 무상이용) ▸면적 : 93㎡(1층) ▸인원 : 6명 ▸운영 : 명지전문대학에 위탁운영 (위탁기간 : '17.1.1~'19.12.31)	▸위치 : 망원동438-16 마포한강아이파크내 (구소유:재건축시 마포구에 기부채납) ▸면적 : 226㎡(1층) ▸인원 : 7명 ▸운영 : 명지전문대학에 위탁운영 (위탁기간 : '17.1.1~'19.12.31)

※ 그동안 구립 센터임에도 적정 공간이 없어 시립 시설내 위치함

나. 조례 제정의 적법여부 및 지방 자치사무 여부 : 적정함

○ "청소년복지 지원법" 제29조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'청소년 상담복지 센터'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(근거:별첨1)

○ 또한 "청소년복지 지원법"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'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'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(근거:별첨2)

○ 따라서, 상위 법령에서 관련 사무를 위임한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복지 사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임을 고려할 때 이건 조례안의 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 한편, 센터 운영에 따른 위탁과 이용료 등의 징수 및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고 판단됩니다.

다.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 제정 유무 : 121개 지자체 제정

○ 서울시 중에는 성북구가 2014.9.25일 조례를 제정하였고

○ 전국의 120여개 타 시·군·구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.

라. 조문의 구성체계 및 내용 등 적정여부 : 적정함

○ 이 조례는 청소년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 14개 조항과 부칙 등으로 조문화하는 등 법규로서 구성 체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또한, 조문의 내용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해 상위 법령 및 서울시 관련 조례 등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없으며, 조문의 용어와 문장 등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○ 특히, 제5조(위탁 및 운영비의 지원)에서 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할 경우 "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"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센터의 위탁관리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마. 예산확보 등 실현가능 여부 : 실현 가능함

○ 이건 조례안 제정 전인 지금도 연간 국비 4,610만원, 시비 4,610만원, 구비 2억4889만3천원 등 총 3억4109만3천원의 예산으로 우리구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○ 아울러, 이건 조례안이 의원발의 조례임을 고려하여 법령상, 예산상, 행정상 등의 측면에서 사전에 시행상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구청장과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조례 제정후 시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바. 센터 이용료 등 산정의 적정 여부 : 적정함

○ 이용료 등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서는 이건 조례안 제9조에 규정되어 있고 세부 이용료는 "별표"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○ 이용료 단가 등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제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.

○ 이건 조례안 이용료 산정은 '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'(근거:별첨5)와 서울시 업무지침(근거:별첨6)를 준용하고 향후 단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.(근거:별첨3)

○ 한편, 2018.10.15부터 10.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2018.10.19일 마포구청장이 이건 입법예고 조례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'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상담 및 검사 이용료'의 제목을 '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상담 및 검사 이용료 상한'으로 "상한"이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하단에 단서로 "※ 이용료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부과·징수"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의견이 있어 이를 우리 위원회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.(입법예고 이용

료 산정 별표 : 별첨3, 입법예고 결과 의견수렴 이용료 산정 별표 : 별첨 4)

○ 다만, 센터의 위탁 운영자가 향후 이용료를 높여 징수하고자 할 경우 조례의 상한가내에서 징수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위탁계약에 반영할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이용료 등의 산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사. 검토 종합의견

○ 위와 같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, 조례 제정의 적법여부 및 지방자치 사무여부,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 제정 유무, 조문의 구성체계 및 내용 등의 적정여부, 예산확보 등 실현가능성 여부, 센터 이용료 등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

○ 우리구의 '청소년 상담 복지센터' 확장 이전과 '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운영' 등을 통한 청소년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이건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다만, 구청장은 조례 제정후 상황의 변경과 사업변경 및 상위 법령의 개정 등이 있을 경우 적기적시에 조례개정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.

○ 아울러, 조례의 제정 시행후 센터의 설치·운영 관련 위탁자의 선정과 지도감독을 차질없이 하는 것은 물론 이용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